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7-79호**  
**2017. 10. 27.(금)**

## 차 례

### 고 시(3)

- 대전 도시관리계획(도로, 소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17-210호) ...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7-211호) .....5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2-읍내26호선) 실시계획 고시(고시 제2017-213호) .....6

### 공 고(6)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17-810호) .....9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공고 제2017-817호) .....10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7-818호) .....12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7-821호) .....13
-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공고 제2017-834호) .....14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7-835호) .....16

### 입법예고(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7-828호) ...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7-829호) ..44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7-832호) .....53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17-833호) .....59

### 행정예고(1)

- 공영주차장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2017-814호) .....65

공 람									
--------	--	--	--	--	--	--	--	--	--

## 대전 도시관리계획(도로, 소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덕구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결과에 따른 변경 및 폐지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로, 소공원) 결정(변경)을 통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로, 소공원)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고시문 및 지형도면 열람가능)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과(042-608-51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교통시설

#####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 (m)								
기정	소로	1	대화2	10	국지 도로	298	대화279	대화294-3	일반도로		1988-08-09	
변경	소로	1	대화2	10~8	국지 도로	303	중로2-45 (대화279)	중로2-45 (대화294-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목상22	8	국지 도로	96	목상858-1	목상산14-15	일반도로		1998-06-10	
변경	소로	2	목상22	8	국지 도로	36	중로3-128 (목상858-1)	목상87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비래1	8	국지 도로	236	비래18	비래49-5	일반도로		1975-01-0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태	주 요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2	비래1	8	국지 도로	48	대로3-42 (비래47-1)	소로3-비래5 (비래47-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비래5	4	특수도로	182	소로2-비래1 (비래산37-25)	비래49-5	일반도로			
폐지	소로	1	신대2	10	국지 도로	125	신대491-4	신대196-2	일반도로		1977-02-26	
기정	소로	1	와동2	10	국지 도로	840	와동383-13	중로3-167	일반도로		1977-02-26	
변경	소로	1	와동2	10	국지 도로	742	대로1-2 (와동383-13)	와동79-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와동1	8	국지 도로	448	와동 346-1	와동48-4			1977-02-26	
변경	소로	2	와동1	8	국지 도로	362	와동353-1	중로1-269 (와동48-4)				
폐지	소로	2	신대4	8	국지 도로	84	신대372-3	신대382	일반도로		1977-02-26	
기정	소로	2	신대5	8	국지 도로	435	신대380	신대228-1	일반도로		1977-02-26	
변경	소로	2	신대5	8	국지 도로	310	소로3-신대3 (신대356)	소로1-신대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신대3	4	국지 도로	112	대로1-2	소로2-신대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오정93	8	국지 도로	230	오정665	오정산22	일반도로		1988-08-09	
변경	소로	2	오정93	8	국지 도로	92	소로2-오정10 (오정665)	오정산23-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읍내16	8	국지 도로	127	읍내353	읍내490-3	일반도로		1977-02-26	
변경	소로	3	읍내12	6	국지 도로	127	소로2-읍내14 (읍내353)	소로3-읍내4 (읍내490-3)	일반도로			
폐지	소로	4	읍내6	4	국지 도로	70	읍내483-7	읍내545-10	일반도로		2003-08-08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소로1-대화2	소로1-대화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형 및 폭원변경</li> <li>- 폭원 : 10m → 10~8m</li> <li>- 연장 : 298m → 303m (증 5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에 따른 변경</li> <li>- 대전산업단지 내 국지도로로 미개설 구간과 인접한 현황도로의 시설결정을 통한 미집행 시설 해소 및 연장 정정</li> </ul>
소로2-목상22	소로2-목상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축소</li> <li>- 연장 : 96m → 36m (감 6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에 따른 변경</li> <li>- 목상초등학교 서측 국지도로로 가로망 형성에 필요한 구간은 기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어 현황도로로 노선을 축소하여 장기미집행시설 해소</li> </ul>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소로2-비래1	소로2-비래1	• 노선축소 - 연장 : 236m → 48m(감188m)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에 따른 변경 - 비래동 현대아파트 동측 국지도도로 토지 여건 상 도로규모 과대하여 현황 개설 도로 및 이용 도로에 맞게 노선 축소를 통해 장기미집행 해소
	소로3-비래5	• 노선신설 - 폭원 : 4m - 연장 : 182m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에 따른 신설 - 소로2-비래1호선 축소에 따라 기 개설구간 현황에 맞게 시설결정 하여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소로1-신대2	-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에 따른 폐지 - 신대동 주공아파트 북측의 국지도도로로 시점부 기존도로 연결 시 단차 및 개설계획 미수립에 의한 폐지
소로1-와동2	소로1-와동2	• 노선축소 - 연장 : 840m → 742m (감 8m)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에 따른 변경 - 와동 현대아파트 동측 국지도도로로 시점부의 미개설구간의 급경사 및 자연환경훼손에 따라 개설이 어려워 노선축소를 통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소로2-와동1	소로2-와동1	• 노선축소 - 연장 448m → 362m (감 86m)	• 도로 기하구조 상 중로3-167호선과 연결되는 곡선반경 내 시점부가 위치하여 교통위험이 예상되어 미개설 구간 폐지함
소로2-신대4	-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에 따른 폐지 - 와동초등학교 남측 국지도도로로 개설에 따른 장래 혜택 미비 및 시점부 단차로 인한 개설의 어려움에 따라 노선폐지
소로2-신대5	소로2-신대5	• 노선축소 - 연장 435m → 310m (감 125m)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에 따른 변경 - 와동초등학교 서측 국지도도로로 시점부 자연적 제약(신대천)에 따라 도로 개설 시 폭원 확보가 어려워 노선축소
	소로3-신대3	• 노선신설 - 폭원 : 4m - 연장 : 112m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에 따른 신설 - 소로2-신대5호선 노선축소에 따라 기 개설된 신대천 인접현황도로의 시설결정을 통하여 미집행시설 해소
소로2-오정93	소로2-오정93	• 노선축소 - 연장 230m → 92m (감 138m)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에 따른 변경 - 오정동 신동아아파트 서측 도로로 자연제약(급경사 및 자연환경)에 따른 미개설로 기 개설구간 축소 결정을 통하여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소로2-읍내16	소로3-읍내12	• 폭원축소 - 폭원 : 8m → 6m (감 2m)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에 따른 변경 - 읍내동 삼덕자연빌라 남측 국지도도로로 미개설 구간 토지매입 어려움에 따라 폭원을 축소결정하여 토지매입비 절감
소로4-읍내6	-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에 따른 변경 - 대전1·2산업단지 내 국지도도로로 개설계획이 없으며, 폐지에 따른 맹지 미발생 및 접근현황도로 존재로 폐지함

## 나. 공간시설

### (1)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소공원	미호 소공원	대덕구 미호동263-3	508.0	감)508.0	-	2006.07.20.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	미호 소공원	• 시설폐지	•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초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관련부서 협의 시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해제 요청하여 이를 반영하여 폐지함

2. 관계도서(도면포함) : 게재생략. 끝.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 여 고시일	도 로 명 주 소 부 여 사 유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도 로 명 고 시 일)	비 고
오정동 477-4	대전로1020번길 17	2017.10.27.	건축물신축	대전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0,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정동 477-5	대전로1020번길 19	2017.10.27.	건축물신축	대전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0,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정동 67-24	오정로100번길 89	2017.10.27.	건축물신축	오정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0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장동 344-24	장동로 241	2017.10.27.	건축물신축	행정구역명(장동)을반영	
장동 344-5	장동로 243-1	2017.10.27.	건축물신축	행정구역명(장동)을반영	
상서동 435-28	상서당1길 52-8	2017.10.27.	건축물신축	윗마을 서당이라는 웃서당, 상서당자연마을 명에서 유래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4)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2-읍내26호선) 실시계획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2-읍내26호선) 「법동 433번지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다 음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43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2-읍내26호선)
  - 나) 사업의 명칭 : 법동 433번지선 도로개설사업
3. 사업의 규모

구 분	도 로 명	사업내용	위 치		비고
			시 점	종 점	
도로	소로2-읍내26호선	도로개설 L=108.3m, B=8.0m	법동 402	법동 384-1	일부 개설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7. 고시일 ~ 2018.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본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거나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공사완료 후 해당 시설관리청에 무상귀속
8. 관계도서 : 게재생략(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 건설과 (☎042-608-5213)에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편 입 용 지 조 서

번 호	소재지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 이외 권리자 사항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주 소	성명	
1	법동	402-1	철	488	198	국토교통부	국			
2	법동	404	전	495	44	1. 박** 외1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9*번길 7-**			
3	법동	402	철	14,086	524	국토교통부	국			
4	법동	405	잡	120	21	기획재정부	국			
5	법동	401-2	임	49	4	대덕구	국			
6	법동	399-2	임	18	18	재단법인대한 예수교***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			
7	법동	403	전	349	27	한**	대전			
8	법동	399-3	임	13	5	재단법인대한 예수교***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			
9	법동	384-1	도	612	74	대덕구	국			
계				16,230	915					

※ 상기 토지상 지장물건 일체 포함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23-28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아 래

####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신탄진동 12	35.82m <sup>2</sup>	2.1m	16.2m	전주이씨
도로지정	3-28				상임파종중

####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5)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원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7년 10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직종	인원	주요 업무	근무부서	비고
기간제 근로자	개별주택 특성조사원	20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자료관리	세무과 (개별주택상황실) 및 관내 조사 현장	

#### 2.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서류 접수 시 간단한 면접 동시 실시

####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0. 31.(화) ~ 11. 3.(금) / (4일간)
-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접수  
※ 본인 직접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함
-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 (본관1층)
- 구비서류
  - 채용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자필이력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 ※ 서식은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

#### 4. 채용요건

- 가.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 나. 컴퓨터 사용 가능자(엑셀 및 한글워드)
- 다. 대덕구 거주자, 부동산가격공시관련업무·통계조사 경험자,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관공서 근무경력자 우대
  -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1, 2, 3급 자격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정보처리분야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5. 채용기간 및 보수

- 보 수 : 51,760원 / 1일 (주차, 월차 적용)
- 근무부서 : 대덕구 세무과 및 관내 조사 현장
- 복 무 :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담당업무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자료관리
- 채용기간 : 2017. 11. 20. ~ 2017. 12. 14.

#### 6. 합격자 발표

- 2017. 11. 6(월) / 개별통보

#### 7.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 무효
-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세무과 개별주택담당자(☎042-608-66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7-67호	가스관 매설	계	주충남도시 가스	가스관	아스팔트	171.0	205.2
		비래동 118-31번지 앞				21.0	25.2
		대화동 35-707번지 앞				30.0	36.0
		석봉동 200-4번지 앞				30.0	36.0
		오정동 485-23번지 앞				30.0	36.0
		중리동 221-10번지 앞				30.0	36.0
		읍내동 274-4번지 앞				30.0	36.0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7-68호	가스관 매설	계	충남도시 가스	가스관	아스팔트	5.0	6.0
		덕암동 17-10번지 앞				3.0	3.6
		신탄진동 295-145번지 앞				2.0	2.4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규정에 의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아 래 -

#### 1. 개별공시지가 결정

- 결정·공시일 : 2017. 10. 31.(화)
- 대상필지수 : 246필지(붙임)
- 상세내역 : 대덕구 민원지적과 ☎(042) 608-5323)

#### 2. 이의신청

- 접수 수 : 2017. 10. 31. ~ 11. 29.(30일간)
- 검증및처리 : 2017. 11. 30. ~ 12. 28.
- 대상 : 지가산정의 명백한 착오 또는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필지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처 : 대덕구 민원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 민원실
- 제출방법 : 이의신청 서식에 신청내용 작성 방문,팩스,인터넷 제출  
인터넷: <http://www.realtyprice.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이의신청 청구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정밀검토 후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small>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small>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b>대전광역시 대덕구 동</b>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용	공시지가 <span style="float: right;">원/m<sup>2</sup></span> 의견가격 <span style="float: right;">원/m<sup>2</sup></span>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7년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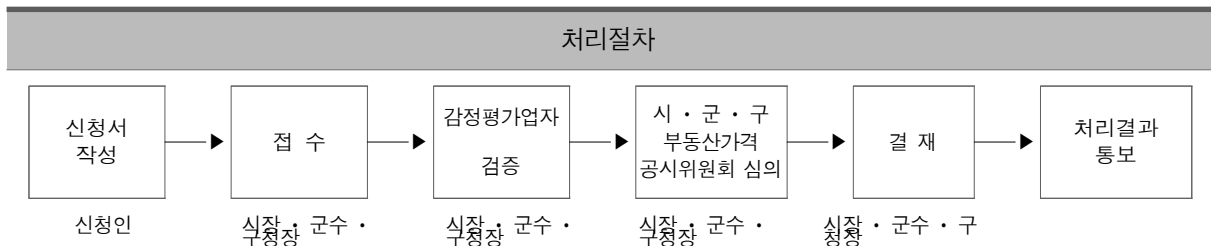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개별공시지가 SMS(문자서비스)를 신청하고 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문자제공내역**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 안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안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 안내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 2017. 10. 26 ~ 2017. 11. 10(15일간)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 대상업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55, 상가동128호  
(빵뜨락피자신탄진점:김성식)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2016.11.24)
4.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제75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7년 11월 10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청소위생과 위생안전담당 ☎(042)608 - 690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권고)을 기본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목적 등에 대하여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

함(안 제1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기능)을 변경함(안 제3조).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변경함(안 제4조).

- 본부장, 부분부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마.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을 정함(안 제9조).

사.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에 대해 정함(안 제14조).

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16조).

자. 위기정보 발령요청과 재난 예보·경보 실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안 제21조까지).

차.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카. 재난수습 홍보를 위한 연락망 개설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함(안 제23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 11.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총괄과(전화: 042-608-5344, FAX: 042-608-3849, E-mail: ljh131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총괄과 담당자 이정해(전화: 042-608-53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복구”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재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제2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구청장
2. 차장: 부구청장
3. 총괄조정관: 안전도시국장
4. 대변인: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다만, 해당 국장 또는 보건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대책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관할하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

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또는 보건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대책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제3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3. 관할 소방서장. 다만,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⑥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 상황
5. 그 밖에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조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시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시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시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재난수습 홍보)**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시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5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책본부장·차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 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p>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p> <p>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p> <p>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p> <p>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p> <p>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p> <p>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p> <p>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p>
	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p>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p> <p>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p> <p>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p> <p>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p> <p>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p> <p>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p>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p>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p> <p>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p> <p>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p> <p>라) 각 부처 및 시, 구 복구현황 파악</p>
	3) 긴급통신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지 원 반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 구축 라) 각 부처 및 시, 구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처 및 시, 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처 및 시, 구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 홍 보 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 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 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구조·구급 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각종 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 리 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구급반	
다. 재난대응협업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 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자치행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자치행정과 -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 ·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 -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경제과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 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경제과 경제과 경제과 경제과 경제과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환경과 안전총괄과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경제과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 교통과 - 교통과 - 건축과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경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총괄과
소방청	가. 화재·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안전총괄과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공원녹지과
해양경찰청	가.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제7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 당 관	통 제 관	총괄 조정 관	차장	본 부 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 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 난 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지진·화산 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안전도시국장			
통 제 관	안전도시국장			
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6+a명		
	반 장	담당관(1명)		
	1)상황관리 총괄반 (5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 주관부서 직원 2명	
	2) 협업기능 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청소위생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자치행정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감사실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대덕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동부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안전도시국장		
통 제 관	안전도시국장		
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1+ $\alpha$ + $\beta$ 명	
	반 장	담당관(1명)	
	1)상황관리 총괄반 (10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3명)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3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 주관부서 직원 1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1명)	· 총무과 직원 1명
	2) 협업기능 반( $\alpha$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청소위생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자치행정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감사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beta$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대덕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동부소방서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동부교육지원청, KT,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적십자사, 육군1123부대, 육군 1970부대 및 그 밖의 대덕구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 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안전도시국장		
통 제 관	안전도시국장		
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8+a+β명	
	반 장	담당관(1명)	
	1)상황관리 총괄반 (17+a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6명)	· 재난상황관리반 6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1명)	· 총무과 직원 1명
	2) 협업기능 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청소위생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자치행정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감사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대덕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동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β)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동부교육지원청, KT,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적십자사, 육군1123부대, 육군 1970부대 및 그 밖의 대덕구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 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안전도시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수습 주관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α+β+γ명	
	반 장	담당관(1명)	
	1)재난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3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재난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6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 주관부서 직원 4명
	2) 협업기능 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청소위생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자치행정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기획감사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재난대응 협업반(β)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대덕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동부소방서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국 소속 직원 · 해당 지역 동 주민센터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및 별표 5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가. 풍수해 (태풍·호우·대설)	1) 비상 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비상 2단계	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진 및 화산	1) 비상 단계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규모 5.0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 2단계	가) 규모 5.0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의견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2. 제정이유

최근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재난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생계 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나. 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 지원을 결정함(안 제3조).
- 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라.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구청장은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 바. 구청장은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함(안 제8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 11.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총괄과(전화: 042-608-5344, FAX: 042-608-3849, E-mail: ljh131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총괄과 담당자 이정해(전화: 042-608-53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사회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

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과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사회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7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5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확정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 부 [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 부 [ ]	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덕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덕구청장이 응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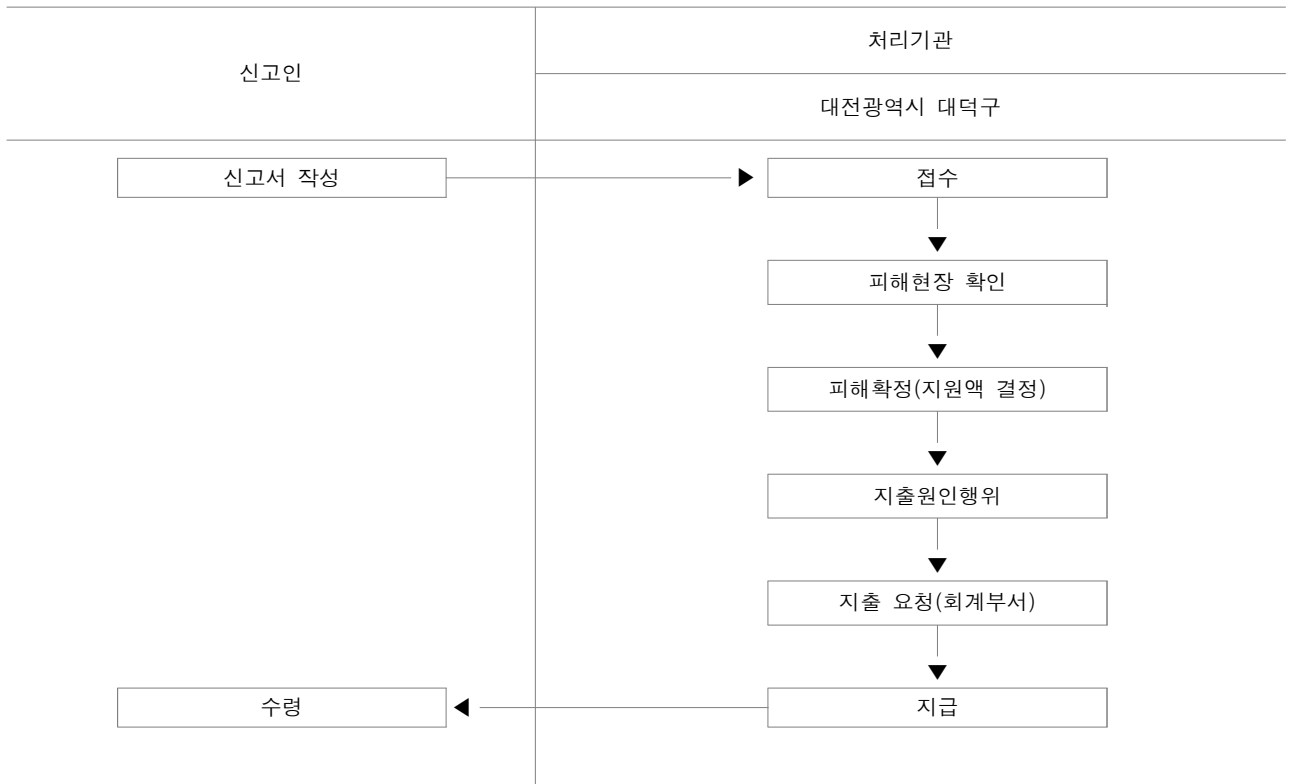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에 사용되어 있는 일본식 한자어가 있는 2개의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2개의 조례에 대하여 개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지참” 을 “지각” 으로 변경
  - “부락” 을 “마을” 로 변경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 11.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전화 : 042-608-6061, FAX : 042-608-3811, E-mail : hmo0728@korea.kr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홍영옥 (전화 : 042-608-60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락”을 “마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p> <p>① · ② (생략)</p> <p>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u>지참</u>·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p> <p>④ (생략)</p> <p>제21조 (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u>지참</u>·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2.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p> <p>-----</p> <p><u>지각</u>-----</p> <p>-----</p> <p>-----.</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 (병가) 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확정기준) 통·반의 확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부락,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제3조(확정기준) ----- ----- -----<u>마을</u>----- ----- -----.</p> <p>1. 2. (현행과 같음)</p>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에 사용되어 있는 일본식 한자어가 있는 3개의 규칙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3개의 규칙에 대하여 개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지참” 을 “지각” 으로 변경

→ “불입” 을 “납입” 으로 변경

→ “행선지” 를 “목적지” 로 변경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 11.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감  
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  
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전화 : 042-608-6061,  
FAX : 042-608-3811, E-mail : hmo0728@korea.kr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홍영옥  
(전화 : 042-608-60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3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생략)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공무원이 휴가· <u>지찰</u>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②----- <u>지각</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 (수납절차) ①·② (생략)	제106조 (수납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구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u>현금불입</u> 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 <u>납입</u> -----

### 제3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NO.	담당자	담당	실·과장	결 재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			
목적지				
용 무				
사 용 자	외 명			
유 류	차량번호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 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번호	운 전 원		
배차일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		
목적지			
용 무			
사 용 자			
유 류	운행거리	Km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			
※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 공영주차장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미래 공영주차장 외 2개소 주차장 내 차량도난 등 범죄예방과 차량 접촉시 과실여부 판독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구축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대덕구 중리미래 공영주차장 외 2개소 주차장 내 차량도난 등 범죄예방과 접촉사고시 과실여부 판독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구축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3. 공고방법 : 대덕구청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

4. 행정예고기간 : 2017. 10. 27. ~ 11. 17. (21일간)

5. 설치장소 : 3개 공영주차장(세부장소 붙임1 참조)

#### 6. 의견제출

중리미래 공영주차장 외 2개소 주차장 내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7. 11.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3)를 대덕구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영주차장 내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우편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대덕구청 교통과 주차시설담당

- 팩 스 : 042-608-3845

- 전자우편 : dlwhddh@korea.kr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대덕구청 교통과(042-608-5292)

【 붙임 1 】

## 공영주차장 CCTV 설치 장소

연번	주 차 장 명	소 재 지	카 메 라 설치계획		비 고
			고정	회전	
1	중리미래 공영주차장	대덕구 중리동 363-23번지	4		200백만 화소
2	중리행복길② 공영주차장	대덕구 중리동 197-17번지	4		"
3	중리구봉 공영주차장	대덕구 중리동 164-5번지	4		"

【 붙임 2 】

연번	위 치 도	전경사진
1		
2		
3		

